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과 심사의 한계[1)]

1. 사실관계

이란 국적의 청구인은 58세의 남성으로 2015. 10. 8. 난민신청을 하였다. 쉥겐 비자[2)](Visum für den Schengenraum)를 소지한 청구인은 이란에서 이탈리아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입국하였다.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Bundesamt für Fremden- und Asylsachen)의 질의에 이탈리아 난민청은 2015. 12. 30. 청구인이 입국했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파킨슨병과 우울증, 동맥성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관상맥관에 혈관폐색을 방지하기 위한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 질환을 이유로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은 이탈리아 난민청에 청구인을 위한 개별 보호를 요청하며 그에게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였다. 2016. 3. 31. 이탈리아 난민청은 개별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답신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난민신청자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소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회람(Circular Letter)이라는 제목 하에 첨부하였다.

2016. 4. 21.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은 청구인의 난민신청을 기각하며 이탈리아가 난민신청 심사 관할국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구인을 이탈리아로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연방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청구인을 이탈리아로 인도함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며 그곳에서

---

1) 2016년 9월 23일자 사건번호 E 1200/2016-12.

2)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외국인이 유럽연합 내의 한 국가에서 쉥겐 비자를 발급받으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청구인이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젊고 혼자 여행 중인 남성으로서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으므로 특수한 취약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탈리아에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없으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점은 그가 이탈리아의 난민수용소에서 일 년 넘게 체류하였다고 서술한 점과 모순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이탈리아 행정청에서 2015. 12. 30. 청구인을 받아들이기로 확답한 사실을 들며 그곳에서 청구인에게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았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3] 침해에 대한 주장 - 청구인은 오스트리아에서의 난민절차가 허용된 이란 국적의 동성동반자와 함께 입국하였다 - 역시 연방행정법원은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외국인의 평등권 침해 등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판대상 판결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외국인의 평등권(연방헌법 BGBl. Nr. 390/1973 제1조 제1항)을 침해당했다.

해당 판결을 파기한다.

3. 이유

(1)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4]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청산을

3) [유럽인권협약 제8조]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로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4) VfSlg. 13.836/1994; VfSlg. 14.650/1996; VfSlg. 16.080/2001, 17.026/2003.

위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zur Durchführung des Internationalen Übereinkommens über die Beseitigung aller Formen rassischer Diskriminierung, BGBl. 390/1973) 제1조 제1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외국인 간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헌법조문은 외국인에 대한 평등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차별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문에 의해 보장되는 주관적 권리는 그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에 기반한 결정과 충돌하며,[5] 행정법원이 일반법을 잘못 적용하여 그 내용이 위의 연방헌법에 반하는 경우[6], 또 행정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7]에도 상기 권리와 충돌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법원의 자의적인 결정은 무엇보다도 법적 상황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와 핵심적인 문제 조사에 있어서의 부작위 또는 적법한 조사절차 자체에 있어서의 부작위, 특히 당사자진술을 무시하거나 서류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시하여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예: VfSlg. 15.451/1999, 15.743/2000, 16.354/2001, 16.383/2001).

(2) 연방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였다.

1) 먼저 연방행정법원은 기록에 기재된 바와 달리 청구인이 '젊고, 혼자 여행 중인 남성으로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그에게 특수한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연방행정법원의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58세의 남성으로서 그의 동성동반자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왔

5) 일례로 VfSlg. 16.214/2001.
6) VfSlg. 14.393/1995, 16.314/2001 참조.
7) 일례로 VfSlg. 15.451/1999, 16.297/2001, 16.354/2001, 18.614/2008.

으며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관상맥관에 스텐트가 삽입되어 위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연방행정법원은 기록에 기재된 바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젊은 남성이라고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 청구인의 개별 보호를 요청할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 근거로 청구인이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일 년 넘게 현지 난민수용소에서 지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연방행정법원의 기록, 구체적으로는 2016. 2. 3.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 공무원이 청구인과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병환으로 인해 이탈리아로의 정확한 입국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았으리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연방행정법원은 '청구인이 이탈리아로 인도될 경우 그곳에서 적절한 처우가 충분히 보장될' 것을 예상하였지만 이는 다시금 기록을 오인한 결과로서 앞서 확인된 것처럼 이탈리아 행정청은 2016. 3. 31. 서신을 통해 청구인의 개별 보호가 불가하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 서신에 첨부된 회람 역시 개별 보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이 사건에 부합하는 내용 또한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러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적절한 조사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해당 판결은 위헌이다.

4. 결론

청구인은 심판 대상 판결을 통해 외국인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따라서 다른 청구의 이유를 검토할 필요 없이 해당 판결을 파기한다.